

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1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05. 6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7년째 동결된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실화함으로써 청소대행업체가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시키고, 청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현재 부과하는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중
 - 기본 부과금액을 17,680원에서 “18,800원”으로,
 - 초과시 부과금액을 1,170원에서 “1,360”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4항
- 2) 정화조청소 수수료 조정계획 [청소행정과 - 5696(2005.4.6)]

나. 예산조치 : 비 예산사업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- 2)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”을 “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별표 3 정화조의 기본란중 부과금액 “17,680”을 “18,800”으로 하고, 정화조의 초과란중 부과금액 “1,170”을 “1,36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“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”				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”			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</u>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	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</u> 」 -----			
〈별표3〉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(11조제1항 관련)				〈별표3〉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(11조제1항 관련)			
(단위:원)				(단위:원)			
구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	구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
분뇨	18ℓ	226		분뇨	-----	-----	
정화조	기본	0.75m'	<u>17,680</u>	정화조	기본	-----	<u>18,800</u>
	초과	0.1m'	<u>1,170</u>		초과	-----	<u>1,360</u>
	야간 할증	정화조 청소요금	7.0%		야간 할증	-----	-----
	지하 할증	정화조 청소요금	7.0%		지하 할증	-----	-----